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보고

< 요 약 >

1. 배경 및 경과

- o 대통령 선거공약 및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능력중심 교원승진제'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추진 결정('03.2)
- o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에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승진 및 교원양성, 연수제도 개선안을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05.10)
- o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운영('06.1.5~7.4)
- 교장승진제와 교장공모제의 병행실시를 골자로 하는 10인 합의안 마련 ※ 10인 합의안 추인이 부결('06.6.9)되면서 특위위원 7인이 사퇴 선언('06.6.12)
- o 특위에서 논의종결을 결정('06.7.4)한 이후, 교육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교원정책 개선방안 미련 ('06.7.14 ~ 8.11)

2. 주요 내용

□ 교원양성제도 개선

- o 신규교사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최소 편성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정 ※ 성적이 일정 기준(75점/100점)에 미달인 경우, 교원자격증 미발급
- o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09년 시행)
- 평가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인정기관 또는 비인정기관으로 판정
- ※ 인정대학에는 행·재정 지원, 비인정대학은 교원자격 발급기능 제한 또는 폐지
- o 초등 및 중등 양성기관 개편
 -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적 개편 유도
 - 중등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양성인원 축소 조정
 - ·교직과정은 장기적으로 사범대 육성이 어려운 분야로 특화
 - 양성기간 연장(5, 6년) 및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장기과제)
- o 교원임용선발 시험 개선: 2단계 전형을 3단계로 확대하고, 교사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에 중점

□ 교원승진제도 개선

- o 연공서열식 승진구조 완화
- 경력평정 반영기간 축소(25년→20년 ; 매년 1년씩 단계적 축소)
- o 교원 근무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제 도입
- 현행 교장.교감 각 50% --> 교장40%, 교감 30%, 동료교사 30% ※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결과는 교장과 교감의 교사 평가시 자료로 사용
- o 근무평정 반영기간의 단계적 확대 및 근무평정 결과 공개
- o 수석교사제 도입 추진 : 교내 장학 및 멘토교사로서 역할 수행

□ 교장공모제 도입

- o 공모제도입은 학부모 전체회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운위가 결정
- o 공모교장 지원자격, 신분, 권한
 - 자격: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
 - 신분: 임기만료후 퇴직 원칙, 희망시 별도절차 거쳐 교사 복귀
 - 권한: 해당학교 교원정원의 30% 초빙권(교감 포함) 부여
 - ※ 엄격한 교장 평가: 일정기준 미달시 교장 응모 또는 교장 중임 제한

□ 교원연수제도 개선

- o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도입(모든 교원 대상 5년간 150시간 이수)
- o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 o 교장자격연수 강화(6주→12주)

3. 핵심 쟁점사항

- □ 다면평가 실시 : 근무평정을 위한 다면평가시 평가주체
 - 교직단체는 동료교사만을, 학부모단체에서는 동료교사·학부모 (초)·학생(중등)으로 확대 주장
 - ※ 혁신위안: 양 입장 절충 (동료교사 30% 반영 + 학생/학부모 평가 활용)
- □ 교장공모제 적용시 선택주체
 - 교직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외에 교직원전체회의 의견 반영 주장
 - ※ 혁신위안: 학부모전체의사를 존중. 학운위가 결정

대통령 보고서 I (총괄)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2006. 8.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우리 학생들은 PISA, TIMMS, 국제올림피아드 등 각종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지 않아 사교육이나 조기유학 증가 등의 이탈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학교교육과 교원의 질에 대한 불만이 놓여 있음.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고전적 명제를 들지 않더라도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우리 교육의 긴급한 과제임. 이에 교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교원정책개선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자 함.

차 례

Ι.	추진 배경 및 경과	• 1
1.	추진배경	·· 1
2.	추진경과	·· 3
Π .	교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
1.	교원정책의 주요 현황	7
2.	현행 교원정책의 문제점	9
Ⅲ.	교원정책 개선방안	11
1.	비전과 정책 목표	11
2.	교원양성제도 개선	12
3.	교원승진·교장임용제도 개선	20
4.	교원연수제도 개선	33
IV.	기대 효과	39
V.	추진 계획	41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 학교교육 및 교직사회의 역할기대 변화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및 교직사회는 산업 사회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변화 지체 현상 심화
 - O 새로운 역할기대에 따른 학교교육 혁신 및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상과 교직문화 창출 필요

극복해야 할 학교상

-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패러다임에 안주하는 학교
-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닫힌학교

새로운 학교상

-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개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학교
-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열린 학교

극복해야 할 교원상

- 학생교육보다 지나치게 승진경쟁에 몰두하는 교사
- 사회변화에 둔감하고 미래 비전과 책임감이 부족한 교장

<mark>새로운 교원상</mark>

- 승진경쟁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
-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비전과 책임감을 지닌 교장

- □ 학교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필요
- 최근 학교교육과 교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 증가
- O 교원의 전문성과 사명감, 혁신적 마인드 절실
- O 현행 교원 양성체제의 정비 및 양성과정의 질 관리체제 강화 필요
- □ 능력중심의 교직풍토 조성 및 교장의 혁신 리더십 요구
 - O 과도한 승진 경쟁으로 교원의 교육력 낭비 심각
 - 수업과 학생지도에 열의가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 필요
 - O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학교교육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장상 정립 필요
 - ※ 현행 제도와 다른 새로운 교장임용제도 도입 : 평교사 57.5% 찬성, 학부모 84.4% 찬성('06. 6. 한길리서치)
- □ 지속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체제 구축 필요
 - O 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학생의 의식·가치관 변화로 인한 교원의 재교육(연수) 필요성 증가
- 현행 교원 연수체제의 현장 적합성과 효과성 미흡
- O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율연수 기회 확대 및 지원 필요

2. 추진경과

	정책배경 및 방향	성과와 한계
문민정부 및 그 이전 (~1997)	 교원단체의 교장임용제도 등 교원정책 개선 요구 점증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교원정책 개선 필요성 증가 교장임기제 시행, 교원양성기관 평가, 초빙교장제, 초빙교사제 등 도입 	 교원승진 적체 해소와 자율적학교운영 확산 등에 기여 5·31 교육개혁방안은 상대적으로 교원정책 개선에 소홀 교원양성과 승진정책 등 민감사안 등에 관해서는 본격적인논의 미비
국민의정부 (1998~2002)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 새로운 교사상 정립 및 열린 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교원정책 개선안 모색 시도	 교원존중 풍토 조성, 처우 개선 등을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 교원의 위상 강화를 통한 전문성 신장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양성, 연수, 승진, 처우개선 등의 종합 방안 마련 추진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을 만들어 여론수렴을 시도하였으나 교원단체의 반발 등으로 결국 최종안 마련에 실패하고 폐기
참여정부 (2003~2007)	 정부출범 이전 : 대통령 공약으로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인수위원회 정책방안으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등 제시 정부출범 이후 : 교육부가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05년 8월 '교원 양성・승진・연수정책 개편 방안'(시안) 마련 교육혁신위원회 : '06년 1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교원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추진, '06년 8월 '교육력 제고를위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주요 내용: 우수 교원 양성 방안,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 전환과 초빙교장제도의 확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제도 개선 등(이와 별도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도 도입) 교육부 시안 마련 과정에서 교원 단체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단체의 이견과 주요 사안에 대한 반대 등으로 시안 미확정, 교육혁신 위원회에 방안 확정 의뢰 능력 중심의 교원 근무평정제도와 교육적 교장공모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학부모 단체는 적극 지기하나 교원 단체들은 반대
미래 전망 (2008~)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주요 개선 방안의 입법 추진 필요 2030년 전후의 시점에 대비하여 한국교육 패러다임의 전환(학제 개편 등)을 위한 연구 추진 	• 이 보고서에 제시된 교원정책 개선안은 대체로 당면한 과제 들임. 향후 학제개편에 대비한 교원양성체제의 근본적 개편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참여정부 이전의 교원정책 개선 노력
 -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
 - 교원양성기관 평가 실시, 초빙교장제 도입, 원격연수 도입 등 연수제도 활성화 시도
 - 일부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승진이나 연수 등 교원정책의 핵심은 현행 유지
 - O 국민의정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 교원존중 풍토 조성, 처우 개선 등을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 교원의 위상 강화를 통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종합적인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시안을 만들어 여론 수렴을 시도하였으나 교원단체의 이견 등으로 최종적인 개선안 마련 실패

□ 참여정부의 교원정책 개선 노력

- O 참여정부 출범 이전
 -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대선공약 ('02. 10.)으로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와 "교원의 직급과 승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약속
 - 대통령직인수위원회('03. 2.)는 교육부문 주요 개혁과제로 "능력 위주의 승진제도 마련", "초빙제, 보직제 도입 등 학교장 임용 제도의 다양화" 제시

O 참여정부 출범 후

- 교육인적자원부는 '03년부터 '04년까지 관련 전문가 및 전문연구 기관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05년 8월 "교원 양성・승진・ 연수정책 개편 방안(시안)" 마련
- 시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로 '05년 10월 시안에 대한 검토 및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은 교원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혁신위원회에 의뢰
 - ※ 이와는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여 '04년 부터 교원성과급제, 교원평가 시범실시, 초빙교장제(자격증 특례학교 포함) 확대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 위원회 산하에 교원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교원정책개선특별위 원회(이하 교원특위)』 구성('06. 1.)
- O 교원특위의 주요 활동 내용
 - 지역순회 토론회, 라디오방송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 교원정책 개 선에 대한 공론화 추진
 - 17차례의 본회의 및 워크숍, 실무위원회 회의 등 교원특위 내부 토론과 작업 수행
 - 대부분의 교원정책 개선안에 대하여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본위원회로 이관하고 특위활동 종료('06. 7.)

- O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 방안 마련
 - 교원특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자료를 기초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수차례의 전체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교육인적자원부와 공식 정책 협의, 교원 및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 수렴
 - '06년 8월 교원양성제도, 교원승진제도, 교원연수제도 개선 방안 최종 의결

교원정책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

- 교원양성제도 : 교원자격에 관한 국가수준의 기준 제정,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
- 교원승진제도 : 교원 근무평정에 다면평가 반영, 교장공모제 도입, 교장·교감 평가제도 도입
- 교원연수제도 : 교장 자격연수 강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도입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주요 단체 입장

▶ 교총 · 교장회

• 주장 :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 교장 자격증 유지 및 현행 승진임용 제도 부분 개선, 교장초빙제 개선 확대 필요

• 이유 : 교장의 전문성 약화, 교단 내부의 갈등 심화 초래

▶ 전교조

• 주장 : 교장공모제 반대 및 교장선출보직제 요구, 교장자격증 제도와 근무평정제도 전면 폐지

• 이유 : 교원 의견 반영 미흡, 근무평정 다면평가 도입은 교원평가 확대 의도, 교장 권한의 과도한 확대

▶ 학부모 단체

• 주장 : 교원 근무평정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교장 공모제 찬성

• 이유 : 학생과 학부모 존중 풍토 조성,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확대

Ⅱ. 교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 교원정책의 주요 현황
- □ 교원 양성 및 임용
 - 초 등 : 11개 국립 교육대학교, 교원대학교, 일부 사립대 등에서 매년 약 6,000명의 교사를 양성하고 6,500명 정도 임용 (임용율 약 110% - 최근 수년간 초등교원 양성인원 부족)
 - 중 등 : 국·사립 사범대학(40개), 사범계 학과(56개) , 교직과정 (152대학), 교육대학원(134개)의 세 가지 유형의 양성기관 에서 매년 약 3만명의 교사를 양성하고 7~8천명 정도 임용 (임용률 약 25%)
 - 교원의 임용 : 공개 경쟁시험(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면접 및 수업 실기 평가)을 통한 선발, 임용
- □ 교원 승진 및 교장 임용
 - O 교원의 승진 구조
 - 교원자격 체계 : 2급정교사 → 1급정교사 → 교감 → 교장
 - 교원승진 구조 : 다수의 평사가 소수의 교감으로 승진하는 과정 에서 치열한 경쟁 불가피

- 승진제도 :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의 4가지 요소를 반영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후 점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 임용
- 교장 임용제도 : 교장 자격증 필수, 일반 승진 임용과 초빙교장제에 의한 임용(시도별 대상학교의 10% 이내), 그리고 자율 학교 교장자격증 특례제도에 의한 임용(자격증 불필요)

□ 교원 연수

- O 연수의 종류: 법정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비법정 연수(단위학교 중심 연수, 개인 중심 연수)
- O 연수기관 현황 : 국가수준 연수원(1), 시도연수원(16), 대학부설 연수원(84), 민간 연수원(1,600여개)
- O 연수 참여 및 연수 결과의 활용
 - 매년 70% 이상의 교사가 연수 참여(단, 승진 포기교사, 사립교사의 연수 참여 저조)
 - 연수 실적과 성적은 승진 등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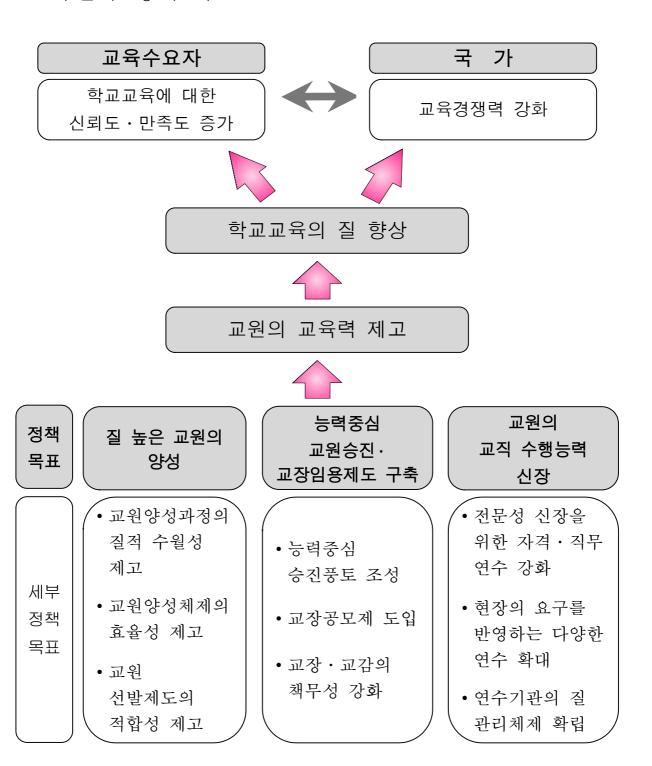
- 2. 현행 교원정책의 문제점
- □ 질 높은 교원양성 기능 미흡
 - O 국가수준의 교원자격 및 교원양성 교육과정 기준 부재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 소홀
 - O 교원 수급 불균형 및 양성과정별 특성화 미흡
 -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으로 교직적격자 선발 곤란
- □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구조 고착
 - O 과도한 승진 경쟁으로 수업과 학생지도 소홀 경향
 - 경력 중심의 승진 구조로 인한 교직사회 활력 부족 ※ 실제로 교장 승진까지 평균 28년 이상 소요(정년 7~8년 전)
 - 구체적인 근무평정 기준 부재 및 상급자 중심의 평정제도 운영 방식 으로 평정 결과에 대한 불신 초래
 - O 교장 임용과정에서 교장 자질 검증 기제 부족
 - O 지역사회 및 해당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교장 임용 경로 부재
- □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체제 미흡
 - O 현장 적합성이 부족한 연수 내용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교원의 능력 및 리더십 개발 미흡
 - 주기적으로 교원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체제 부재

- 공급자 위주의 연수 운영으로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 연수 기관 및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부재
- □ 교원의 교육력 약화로 학교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 사교육 확대, 조기유학과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 대안교육 수요 증가
 -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 증가 및 교원의 사회적 위상 저하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교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교원정책 개선방안 필요

Ⅲ. 교원정책 개선방안

1. 비전과 정책 목표



- 2. 교원양성제도 개선
- □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비 전

교원의 교육력 제고

정책목표

질 높은 교원의 양성

세부목표

주 요 이 행 과 제

교원양성의 질적 수월성 제고

-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 제정
-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 제고

-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교원선발제도의 적합성 제고

- 공개전형제도 개선
- 농산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
- 전문교과 및 선택교과 담당교사 충원방법 개선

가.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1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 제정

- □ 신규교사 자격기준 제정
 - 「신규교사 자격기준」을 기본적 자질과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등의 형태로 제정
- □ 교육과정 편성 최소 기준 설정
 - O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
 - 전공 50학점(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이상, 교직 22학점(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이상
- □ 무시험 검정에 대한 관리체제 개선
 - 교원양성기관에 '교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O 성적이 일정 기준(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5점)에 미달인 경우에 교원자격증 미발급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

- □ 현장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 O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과목 및 교직인성을 강화하는 교과목 확대
 - 교원양성기관에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 운영
- □ 교육실습의 내실화

2

- 교육실습 최소기준을 상향조정(4학점 이상)하고,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 기준」개발·적용
- 보조교사·봉사활동·참여관찰 등에 의한 사례연구 등을 2학점 이하 로 인정
- □ 교육현장과 양성기관간 교류 활성화
 - 현장교육 경력자 채용 확대, 양성기관의 교수인력 학교현장 연수제 실시, 양성기관과 일선학교의 공동연구와 교육 등
 - O 교육현장과 교원양성기관의 교류활성화 정도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반영

나.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 제고

3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
 - O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법제화하여 '09년부터 시행

교원양성기관 최소필수 평가인정 기준(예시)

- 교수 1인당 학생수: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함
- 교과교육 전공교수: 국민공통 기본교과 대상, 학과당 1인 이상 확보 ※ 겸임·초빙교수 가능(단, 이 경우 교수1인당 학생수 산출기준에는 제외)
- 교직교과 담당교수: 대학별 교원양성 총 승인인원(사범대정원, 교직과정이수예정자) 200명당 1인
- 교육과정 : 최소기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시설 및 설비: 수업행동 분석실, 멀티미디어제작실 등 확보
- 평가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인정기관 또는 비인정기관으로 판정하고, 인정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 비인정대학은 교원자격발급기능 제한 또는 폐지
-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 「교원양성 및 자격검정심의위원회(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 원양성에 관한 실질적 정책심의 기능 수행

4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편 유도

《권장 개편유형》

- ① 교육대학과 인근 대학간 연합체제 구축
- ② 교육대학과 인근 국립대학의 통합
- ③ 인근 교육대학간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 ④ 교육대학과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별도의 교원종합 대학으로 전환

□ 중등교원 양성체제 정비

- 중등교원 양성기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양성기관의 중등교원 양성인원 축소 조정
- 장기적으로 사범대 및 사범계 학과는 국민공통기본교과 교사 양성에 집중하고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로 특성화 유도
- O 교육대학원은 대학원별 또는 전공별 교원양성기능과 연수기능으로 분리

□ 양성기간 연장 및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장기과제)

- O 장기적으로 현행 4년의 양성기간을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10년까지 도입 여부 확정

◆ 5년 양성(안) : 학·석사 통합형 ◆

- 교사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 및 경험 축적, 특기적성 지도능력 강화 효과 기대
- 15주 이상(1학기) 교육실습 기간 확보 용이
- 현행 교원양성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환 용이
-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6년 양성(안) :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

-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교원을 학습지도 전문가로 육성
- 실습 내실화 및 교직 분야 중점 교육 기대
-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중 요건충족 대학을 단계적으로 전환
- 전문분야 인력은 전문성을 검정, 1년 특별양성과정도 개설
- 실업계교과(현 교직과정 양성분야) 교원양성에 대한 대책 필요
-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다. 교원 선발제도의 적합성 제고

공개전형제도 개선

5

- □ 전형 단계 및 교직관 평가 비중 확대
 -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3단계로 전환하고, 2차(교직 및 전공논문) 및 3차(면접, 수업실기능력) 시험에서 교사의 자질을 중점 평가
 - O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1차 지필고사 제외 및 가산점 등 반영 비중 조정
 - O '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 교육청별 선발방법의 다양화
 - O 시험유형(선택형, 서술·단답형, 논문형 등) 및 배점비율 다양화
 - O 각종 교육과정 이수활동 등 반영 내용 자율화

【교원임용시험 개선 방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1단계전형 (1차시험)	 ▶ 지필고사(100점) - 교육학(20점, 4지선다) - 전공(80점, 서술・단답형) ※ 초등은 교육학(30점), 교육과정(70점) ▶ 대학 재학성적(20점) ▶ 가산점(10점) 	 ▶ 지필고사(100점) - 교육학 및 전공(초등은 교과 교육과정) ※ 출제형태 (선택형, 서술・ 단답형) 및 배점 비율은 각 교육청이 결정 ▶ 대학 재학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130% 선발	150~200% 선발*
2단계전형 (2차시험)	 ▶ 논술 ▶ 면접 ▶ 실기평가 ※ 교육청별 총50~60점 부여 	 ▶ 논문형 시험(100점) - 초등 : 교직에 대한 종합적이해 - 중등 : 교직에 대한 종합적이해 및 전공능력
	100% 선발	130~150% 선발*
3단계전형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 실기능력 평가(100점)
(3차시험) 	-	100% 선발
합격자 사정	1차시험, 2차시험 점수합산 (130점) + (50~60점)	2차와 3차 시험성적만 합산
특 징	1차시험 중심형 ※ 최종합격자 결정에 1차 지필 고사 영향력 과다(총점의 55% 정도)	2~3차 시험 중심형 ※ 1차시험은 예비합격자 선발에만 활용

^{* 1,2}차 시험 합격자 비율은 적정수준에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서 자율적으로 결정

6 농산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 □ 「교육감 추천제」확대 ○ 교육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감 추천 농어촌 지망 교사 특별전형 확대 □ 수당인상 등 농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유인 제공 □ 교원확보가 어려운 지역 특별채용제도 도입 ○ 교원양성기관의 장 추천자 대상 특별채용 ○ 지역별 교사 공모를 통한 특별채용 7 전문교과 및 선택교과 담당교사 충원방법 개선 □ 희소교과 등의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활동 O 정규교사 채용이 어려운 선택교과의 경우 전문인력을 일정기간

□ 산학겸임교사 활용 범위 확대

연수 후 특별채용 방안 검토

○ 일반 교원이 지도하기 어려운 분야, 교과교사와 협력학습이 효과적인 분야로 대상 확대

- 3. 교원승진 · 교장임용제도 개선
- □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비 전

교원의 교육력 제고

정책목표

능력중심 교원승진 · 교장임용제도 구축

세부 정책 목표

이 행 과 제

능력중심 승진풍토 조성

- ○경력 평정의 기간과 비중 축소
-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O연수성적 평정 방식 개선
- O가산점 제도 개선
-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선
- ·O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방법 개선
- O수석교사제 도입

교장공모제 도입

- ○단위학교에 교장공모제학교 선택권 부여
- ○공모 교장의 자격과 신분 등 규정 신설
- ○공모 교장의 자질・능력 심사 강화

교장 · 교감의 책무성 강화

- ○교장・교감 평가제도 도입
- O순환근무제 개선
- O교감 근무평정 제도 개선

가. 승진제도 개선

8 경력 평정의 기간과 비중 축소

- □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하향 조정(매년 1년씩 단계적 축소)
- □ 현행 경력평정 점수(90점)를 근무평정 점수보다 낮게 조정

9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 신뢰성 제고

- □ 다면평가 제도의 도입
 - 상급자 평가 비중을 줄이고 동료교사 평가 추가(30%)

구 분	현행	개 선 안	
평가 주체 및 비율	평정자(교감) 50% 확인자(교장) 50%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개선 이유	관리자에 의한 현행 평가는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다면평가를 통해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		

- □ 근무평정 지표와 비중 조정
 - O 학습지도, 생활지도에 관한 평정 비중 상향 조정

-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병행 활용
- O 학습지도, 생활지도에 관한 교장과 교감의 교사 평정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결과를 평정 자료로 사용
- □ 근무평정 점수의 조정
 - O 근무평정 점수를 경력평정 점수보다 상향 조정
- □ 반영 기간의 확대 조정
 - O 유예기간을 두고 반영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직기간 전체 반영
- □ 자기실적 평가서 서식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안
기재사항	담당업무 추진목표 및 추진실적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중심으로 기재 학생과 학부모 평가(만족도 조사) 결과와 각종 의견 수렴 사항 및 개선 내용 포함
개선 이유	자기실적 평가서의 내실 있는 기재를 통한 피드백과 자기개발 활성화로 교원 전문성 제고	

- □ 평정 결과의 공개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평정 결과 공개

10 연수성적 평정 방식 개선

□ 자격연수 성적 반영 내용과 방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내	a o	자격연수(9점 만점) 및 직무연수(6점 만점) 반영	직무연수(6점 만점) 반영
개선 이유 '교감자격연수'성적 중복 활용		'교감자격연수'성적 중복 활용 병	방지

- □ 직무연수 실적 반영 방식 개선
 - 점수제 평가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급제 평가방식 도입
 - O 60시간 미만의 연수 실적도 합산하여 반영
- □ 연구 실적 반영 방식 개선
 - O 총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요소별 반영점수 상향 조정
 - O 연구실적을 반영하는 연구대회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정비

11 가산점 제도 개선

- O 총점을 대폭 축소하고 가산점 항목 및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O 시·도간 교류시 가산점 조정 근거 조항 신설

12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선

- □ 인사위원회 위상 강화
 - O 교육공무원법에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근거 조항 신설
 - O 참여 인원 확대
 - 학부모·지역주민을 전체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
- □ 교육청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개선
 - O 교육청 관계자, 교원, 학부모·지역주민 및 외부 교육전문가 등 참여
 - O 학부모·지역주민을 전체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
- □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기능 확대
 - 교장임용심사위원회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심사, 교장 중임 여부 심사 기능 추가
 - O 교육청 인사위원회: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의 적부 판단

13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방법 개선

□ 정성적 심사 강화

- O 교육감이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통해 승진예정인원의 1.5~2 배수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도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 교장임용심사위원회가 교장 자질 적합성에 대한 정성적 심사 실시
 - 심사 자료 : 학교운영계획서, 교육활동 증명자료(포트폴리오), 자기실적평가서, 각종 다면평가 기록, 각종 경력 및 연구실적 자료, 추천서 등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소견발표, 심층면접, 집단토의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바탕으로 적부 판단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의 수는 현행 시행방식의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감이 확정

14 수석 교사제 도입

□ 배경

-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교사 우대 방안 필요
- O 현행 승진제도의 과도한 경쟁풍토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보완 필요
- □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
 - O 수석교사의 역할: 교내 장학 및 멘토(Mentor)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
 - O 수석교사의 신분과 역할, 처우 등에 관하여는 추후 연구 및 여론 수렴을 통하여 구체화

나. 교장공모제 도입

- □ 교장공모제의 개념
- 일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을 가진 현직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교장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제도
 - ※ 새로 도입되는 교장공모제와 현행 초빙교장제의 차이점 : 일반학교에 교장 자격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공모제 도입
 - ※ 교장자격증을 전제로 하는 초빙교장제는 교장공모제로 통합
 - ※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초빙교장제'는 교육인적 자원부 방침대로 유지, 다만, 명칭은 '개방형 교장공모제'로 규정

<학교 유형별로 적용되는 교장 임용병	강식	
----------------------	----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일반학교	교장승진제 교장초빙제	교장승진제 교장공모제
특례학교 (자율학교)	교장승진제 초빙교장제 (일부 특성화고에는 개방형)	교장승진제 교장공모제 (일부 특성화고에는 개방형)

- □ 교장공모제 유형
 - O 유 형 : 학교 단위 공모제와 지역 단위 공모제로 구분
 - 학교 단위 공모제 :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장 공모와 심사 절차를 진행 하여 2인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교장공모제 유형
 - 지역 단위 공모제 : 시·도 교육청(조례에 따라 지역교육청도 가능)에 설치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모와 심사 절차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인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교장공모제 유형

15 단위학교에 교장공모제 선택권 부여

- O 공모제 적용 여부 및 공모제 유형 선택에 관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신청
 - ※ 단, 제도도입 초기 2년간은 교육감이 공모제 적용 학교 수를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별 적정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초중학교 중심으로 시범 실시 추진

16 공모 교장의 지원자격과 신분 등 규정 신설

- □ 공모 교장 지원 자격
 - 초중고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의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
 - O 공모 범위 : 전국 단위로 응모 기회 부여
 - O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기간에 중복 지원 금지
- □ 임기 및 중임 여부
 - O 4년 임기에 중임(연임 포함) 허용. 단, 동일학교에서는 1차에 한해서만 중임
 - O 공모교장이 연임을 원할시에는 일반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가능
 - 승진제에 의해 임용된 교장이 공모제에 의해 교장이 된 경우에는 승진제 경로 재진입 금지

□ 신분

O 임기 만료 후 퇴직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사로 복귀 가능

□ 권한

- 교감을 포함하여 해당학교 교원 정원의 30% 이내에서 초빙교원 요청 권한 부여
- 공모 교장이 초빙하는 교원은 당해 시・도의 교원으로 제한

17 공모 교장의 자질·능력 다단계 심사

- □ 공모 교장 심사위워회의 구성
 - O 학교 단위 공모제의 경우
 - 구성 주체 :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구 성 원 :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교육청, 동창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비율 :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준용)
 - 구성 방법 : 교원 심사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 학부모 심사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지역인사 심사위원은 학 교운영위원회 추천 인사로 구성

- O 지역 단위 공모제의 경우
 - 구성 주체 : 시·도 교육감 단,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
 - 구 성 원 :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구성 비율 : 교원 30%, 학부모·지역주민 50%, 교육청 인사 및 외부 전문가 20%
 - 구성 방법 :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위촉

□ 공모 교장 심사 절차

- 1차 심사 : 이력서, 추천서, 교육활동 증명자료(포트폴리오), 자기 실적평가서, 각종 평가 자료, 학교운영계획서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5명 이내로 선발
- O 2차 심사: 학교운영계획서의 공개발표, 심층 면접과 집단 토론 등을 거쳐 3명 선정(경력연수, 근무평정, 연구점수, 가산점 등은 공모 심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O 3차 심사

- 학교단위 공모제의 경우 : 단위학교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3인에 대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순위를 정하여 최고 득표자 2인을 교육감에게 추천
- 지역단위 공모제의 경우 : 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3인에 대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순위를 정하여 최고 득표자 2인을 교육감에게 추천(단, 1회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 심사위원회에 재추천 요구)

- □ 공모 교장의 임용
 -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2인의 후보자 중 교육감이 교장 임용 후 보자 지정
 - 교장 임용 후보자는 교장직무연수 이수 후 임용
- 다. 교장·교감의 책무성 강화

18 교장·교감 평가제도 도입

- □ 평가 주체
 - 평가관리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단위학교 교원평가관리위원회)
 - 평가자 : 교원, 학부모, 전문가, 당사자(자기평가)
- □ 평가 내용
 - O 학교 운영 전반
- □ 평가 시기와 방법
 - O 평가 시기: 매년 연말
 - 평가 방법: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 교장·교감의 자기평가 병행 실시
 - 평가 결과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

□ 평가 결과 활용

○ 승진제 교장 : 일정 기준 미달시 중임 제한

○ 공모제 교장 : 일정 기준 미달시 일정 기간 교장공모 응모 제한

○ 교감 : 교장과 관할 교육청의 교감 근무평정시 평정자료로 활용

19 순환근무제 개선

- 교장으로 부임한 학교에서 4년 임기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임기 내 전보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밝히도록 함.
- 학교장이 요청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원 순환전보 유예
 - 단, 이 조치에 의한 유예 기간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20 교감 근무평정 제도 개선

○ 다면평가 방식 도입

구 분	현 행	개 선 안
평가 주체 및 비율	평정자(교장) 50% 확인자(교육청) 50%	교장 50% 교사 25% 교육청 25%
개선 이유	 교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교감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지도력 형성 지원·촉진 교육청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O 교감 근무평정 점수에 대한 교육청 조정 범위 축소

- 4. 교원연수제도 개선
- □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비 전

교원의 교육력 강화

7

정책목표

교원의 교직 수행능력 신장

세 부 목 표

주 요 이 행 과 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직무 연수 강화

- 교장·교감 자격연수 개선
-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표준화
-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도입
- 직무연수 성적 평가 방법의 개선
- 직무연수 경비 지원 확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 확대

- 맞춤형 연수 운영
- 참여식 연수 방법의 확대
- 현장교원의 연수 강사 활용 확대
- 연수기관별 연수 대상 제한 폐지

연수기관의 질 관리체제 확립

-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 원격연수의 확대 및 「원격연수지원센터」설치
- 연수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직무 연수 강화

21 교장·교감 자격연수 개선

- □ 리더십 및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한 실무·실습 강화
 - O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 신설
 - ※ 예 : 민주적 리더십, 변화선도, 갈등관리, 학교경영 관리, 새로운 문화 수 용능력, 정보화 등
 - O 연수방식 다양화 : 현임교장 멘토링제, 실무실습, 사례연구, 민간 기관 위탁연수 등
 - O 교장자격연수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연장하되 연수 시기는 임용 전후에 적절하게 배치
- □ 교장 자격연수기관 확대
 - O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교장자격 연수기관 확대
 - ※ 연수기간의 연장으로 기존의 연수기관(현재 서울대 160명, 서울교대 160명, 교원대 2,000명)만으로는 수요 충당 불가능

22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표준화

- O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동일한 자격연수는 최소한의 공통교육과정 이수 여건 마련
- O 성인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연수내용, 연수방법, 평가방법 등 포함
- O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 '교과교육, 학급경영, 교수학습, 평가관리' 등 경력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 중점 편성

23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도입

-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이수
- O 이수학점제는 입직 후 6년차부터 적용

24 직무연수 성적 평가 방법의 개선

- O 현행 연수성적 점수제 평가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하여 그 결과를 점수와 함께 병기
- O 승진 평정시 대표점수 반영

25 직무연수 경비 지원 확대

- O 자비부담 직무연수 60시간 1강좌 표준연수비(13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
- 1강좌 기준 100% 지원 이후 '10년까지 2강좌까지 확대 추진 ※ '05년 현재 지원비율 70%, 73억원 지원
- 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 확대

26 및 맞춤형 연수 운영

- □ 교원들이 원하는 연수과정 지원
 - O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개설
- □ 자발적 소규모 연수 프로그램 지원
 -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들의 소규모 연수 프로그램을 시·도의 '특수분야 연수과정'으로 지정하고 직무연수로 인정

27 참여식 연수 방법의 확대

O '토의, 사례발표, 세미나, 역할 연습, 현장 체험' 등으로 연수 대상자의 참여 기회 확대

28 현장 교원의 연수 강사 활용 확대

- O 우수 교원을 발굴하여 연수기관 '겸임강사'로 위촉
- O 현장교원 강사 배정비율 확대

29 연수기관별 연수 대상 제한 폐지

○ 교육대학 및 대학부설 연수원의 명칭을 교육연수원(가칭)으로 하고, 연수대상을 전체 교원으로 확대 다. 연수기관의 질 관리체제 확립

30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 □ 평가 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연수원,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연수원 평가
 - O 시·도교육감은 특수분야 연수기관 평가
- □ 평가결과의 활용
 - O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수기관 인가 취소

31 원격연수 확대 및 「원격연수지원센터」설치·운영

- O 각종 연수과정에 원격연수(e-Learning) 확대 권장
- O 원격연수 내실화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원격연수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

32 연수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 O 전국단위로 '시·도 교육연수원 협력체제' 구축·운영
- O 지역단위로 시·도 교육연수원과 양성대학간 연수기관 협력체제 구축

IV. 기대 효과

■ 교원정책 개선을 통한 교육력 강화는 우리 교육현장과 교직사회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론중심의 교원양성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원양성

- 교육현장과 수시로 소통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정착
- O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교원자격 기준 정립을 통한 최소 질적 기준 유지
-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

연공서열 중심의 교직사회

능력 중심의 교직사회

- O 능력 중심의 승진풍토 조성으로 새로운 교직문화 형성 가능
- O 수업과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정착
- O 유능한 교장에 의한 학교혁신 촉진 기대

승진을 위한 형식적 연수

 \Rightarrow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 연수

- 자격연수의 기간 확대 및 실무·실습 등 내용 강화로 직무수행능력 제고
- O 직무연수 강화 및 다양한 연수의 확대로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 가능
- O 교원연수기관 평가를 통하여 최상의 연수 수준 유지

- O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구현
- O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소통 증대로 교육공동체 형성 촉진

학교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향상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생지도 중심의 교직풍토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V.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 정부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 : '06. 9~11월

○ 관련법률 개정(정부입법) : '07. 2월까지

O 하위 법령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07. 12월까지

○ 정책 개선안의 시행 : '08. 1월

□ 추진 방식

-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정책개선추진단(가칭)' 구성·운영
 - 정례적으로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상황 협의·조정